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8월 11일, 이해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8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6.9.1.) 상정·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9.14.)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6.9.15.)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해식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유출 관련 중대범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중복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통보를 받은 사건도 이첩요청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안 제2조제1호마목 및 제43조제2항 및 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생 략

4. 대체토론 요지

(박덕흠 위원)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수사나 사건 불송치 등을 재검토할 구제수단이 약화되며,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체계를 재검토해야 함.

(정춘생 위원)

개정안 상정에 찬성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회적 약자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김예지 위원)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보완수사 기회를 열어 두려는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7개 범죄만으로 범위를 한정할 경우 장애인 피해와 관련된 다른 범죄 등 보완수사가 필요한 범죄가 제외될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음.

(이상식 위원)

10월 2일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있어 법률 정비가 시급하며, 경찰의 수사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한 경찰 조직이 다시 수사하게 하기보다 중수청이라는 별도의 수사기관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명옥 위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뒤 발생한 공백을 개별 법률의 예외규정으로 메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님. 검사의 보완수사권 자체를

복원하고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함.

(양부남 위원)

중수청이 사기·절도 등 일반범죄까지 처리하게 되면 본래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중수청이 보완·재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일반범죄의 범위를 7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한정하여야 함.

(박상웅 위원)

왜 7개 범죄에만 한정하는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나머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함.

(강명구 위원)

보이스피싱·주가조작 피해자 등도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만으로는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복원해야 함.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이해식)

개정안의 보완수사 요구 주체를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아 중수청으로 이송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가. 찬성(양부남 위원, 임호선 위원)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완·재수사 대상을 7대 범죄로 한정하는 것에 찬성함.

나. 반대(강명구 위원, 박덕흠 위원, 박상웅 위원, 서명옥 위원, 주호영 위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뒤 중수청에 다시 보완수사 기능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7대 범죄로 한정할 합리적 기준이 부족하고 그 밖의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조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의 보완수사 요구 주체를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아 중수청으로 이송된 사건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정하여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함.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조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조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모두개정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조제2호나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범죄, 같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하여 이송된 범죄 및 같은 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재수사요구를 한 범죄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 제 8 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범죄 및 동법 제245조의 8 제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2. ----- 가. (개정안과 같음) 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 제 8 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범죄, 같은 법

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
의 장이 중대
범죄 수사청
또는 지방중
대범죄수사청
에 재수사요
구를 한 범죄.
이 경우 그 범
죄는 다음 1)
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하
다.

1)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

제197조의3제
5항에 따라
검사가 중대
범죄 수사청
또는 지방중
대범죄수사청
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하
여 이송된 범
죄 및 같은
법 제245조의
8제9항에 따
라 각급 공소
청의 장이 중
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
대범죄수사청
에 재수사요
구를 한 범죄.
이 경우 그 범
죄는 다음 1)
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하
다.

1) ~ 7) (개정
안과 같음)

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
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
소년의 정보
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3) 「스토킹범
죄의 처벌 등
에 관한 법
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4)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5) 「장애인복
지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u>장애인학대관</u> <u>련범죄</u> 6) 「<u>노인복지</u> <u>법</u>」 제1조의 2제5호에 따 른 <u>노인학대</u> <u>관련범죄</u> 7) 「<u>가정폭력</u> <u>범죄의 처벌 등</u> <u>에 관한 특례</u> <u>법</u>」 제2조제3 호에 따른 가정 <u>폭력범죄</u>	
<u>나.</u> (생 략)	<u>다.</u> (현행 나목과 같음)	<u>다.</u> (개정안과 같 음)
<u>다.</u> 중대범죄 및 <u>가목·나목의</u> 범죄와 관련하 여 직접 관련 성이 있는 범 죄	<u>라.</u> ----- <u>가목부터 다목</u> <u>까지의</u> ----- ----- -----	<u>라.</u> (개정안과 같 음)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제18조의4까지,”를 “제18조의4까지의 범죄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 중 기술유출 등 국가핵심기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를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핵심기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다)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나목의”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로 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범죄, 같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하여 이송된 범죄 및 같은 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재수사요구를

한 범죄. 이 경우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 6)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제43조제2항 중 “제2조제2호가목·나목의”를 “제2조제2호가목·다목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를 “제2항에 따라 인지 사실이 통보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 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 의 범죄를 말한다. 가. ~ 라. (생략) 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 한 법률」 제18조 및 제18 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71조제1항제11호부 터 제14호까지 및 <u>같은 조</u> <u>제2항, 「형법」 제356조,</u> <u>「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u> <u>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u> <u>범죄 중 기술유출 등 국가</u> <u>핵심기반(「재난 및 안전</u>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 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 1.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 ----- ----- ----- <u>제18조의4까지의 범</u> <u>죄와</u>----- ----- ----- ----- <u>같은 조 제2항</u> <u>중 국가핵심기반(「재난</u> <u>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u> <u>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u> <u>을 말한다) 공격에 해당하</u>

관리 기본법」 제3조제12
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
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
버범죄

바. ~ 사. (생략)

2.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
다.

가. (생략)

<신설>

는 범죄

바. ~ 사.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형사소송법」 제197조
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
소청 및 지청의 장이 중대
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
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요
구를 한 범죄, 같은 법 제
197조의3제5항에 따라 검
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하여 이
송된 범죄 및 같은 법 제2
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중대범죄수
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
사청에 재수사요구를 한
범죄. 이 경우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

죄로 한정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
소년대상 성범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
죄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
대범죄

5) 「장애인복지법」 제2
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관련범죄

6) 「노인복지법」 제1조
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
대관련범죄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

<u>나.</u> (생략) <u>다.</u> 중대범죄 및 <u>가목·나목</u> 의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제4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생략) ②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 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 는 <u>제2조제2호가목·나목의</u> 범 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③ <u>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u> <u>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u> <u>범죄수사에 대하여</u> 제2조제1호 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	<u>죄</u> <u>다.</u> (현행 나목과 같음) <u>라.</u> ----- <u>가목부터 다</u> <u>목까지의</u> ----- ----- 제4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제2조제2호가목·다목의</u> ----- ----- -----. ③ <u>제2항에 따라 인지 사실이</u> <u>통보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u> <u>수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u> <u>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u> <u>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u> - ----- ----- ----- ----- ----- -----
--	--

을 요청한 경우에는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장이 그 이첩 여 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 ----- .
---	--